

분과위원회 설치(안) -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1.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 사법행정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 하나로서, 전문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장기보직에 따른 직무침체와 부조리 방지, 보직에 따른 형평성 제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법원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법업무도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잦은 순환보직으로 직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짐
- 장기근무형 보직관리가 필요한 전문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기여

2.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 방안

- 위원 구성 방안 ⇨ 내부위원(법관, 법원공무원), 외부위원
- 사법부 법원공무원의 업무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역량강화이므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관, 법원공무원, 외부전문가를 포함
- 법원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이므로 내부위원에 법원공무원이 다수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규칙 제8조제6항(“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에 따라 위원 구성 시 공개적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 신청 또는 추천의 이유(전문성, 그 동안의 경험 등)를 요청함으로써 위원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또는 추천이 없더라도 책임자를 섭외하여 위원으로 선정 가능

■ 간사

-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업무 주요담당자(인사운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사법등기심의관)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3.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부의·회부 예상 안건

1) 법원공무원 전문업무 분야 설정

■ 논의의 필요성

- 법원공무원의 업무는 순환보직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지만 그 중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인사희망 기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고 사법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 재판업무, 비송업무, 재판지원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문업무 분야로 지정하여 장기근무형 보직 관리를 함으로써 순환보직의 문제점 개선

■ 전문업무 분야 설정에 대한 검토

- 재판(민·형사, 가사, 소년, 행정), 비송(가족관계등록, 신청, 집행, 등기, 공탁), 재판지원(사법지원, 사법등기, 예산, 회계)
- 현재 법원의 특정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보직기간을 규정화하여 운영
 - 법원조사관(4년), 가사조사관(3년), 회생위원1)(3년), 간이조사위원2)(2년), 증인지원관(2년), 소송수행전담팀3)(2년)

2) 전문업무 설정 시 선발 방안 등

■ 타 기관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근무형태와 모집방안) : [별지] 참조

■ 법원공무원 전문업무로 설정된 경우 업무책임자 선발 방안에 대하여 타 기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1)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조

-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

- 조사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3)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 ① 팀원의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내부 공모제, 업무 유경험자 추천제 등
- 전문업무 희망자가 없는 경우 운영 방안 모색

3) 전문성 강화 제도 지원 및 다양한 방안 검토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방안 및 교육과정 연구

- 전문업무에 대한 근무기간, 인사·급여 등 우대정책 검토
 - 전문업무 분야 근무자 우대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 필요
 - 타 기관 전문분야 보직자의 인센티브 제공과 형평성 고려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기관에서의 전문훈련, 국내·외 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장 단기 교육 수료 등 방안 검토

▣ 전문인증제도 운영 및 각종 우대

- 교육 또는 시험 등을 거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 인증」 부여
- 해외연수, 직무파견 등 우대 정책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화 극대화

[별지]

타 기관 전문직위 운영현황

구분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전문직위 지정유형	인사제도개선 인사운영	조직운영(예산, 인사) 기획(공안,강력,형사) 수사, 감정	전분야 운영 조사 징세(소득세 법인세) 인사, 감사, 예산	조사, 통관, 심사 예산, 인사
직위 현황 보임율 등	60개의 직위 약 50명 지정	수사 215개 직위 대검본부는 35개 직위 보임율 약 80%	전분야에 지정되어 있음 보임율은 낮은 편임 (전체직원 2%)	약 150개의 직위 (본청 전문직위는 보임율 높음)
지정 요건	전체경력 5년이상 해당업무 2년이상	전체경력 3년이상 해당업무 2년이상	전체경력 3년이상 국세분야는 3년이상 다른분야는 2년이상	전체경력 3년이상 해당업무 2년이상
지침 운영 여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세부계획은 내부결재 (전문직위에 대한 계획을 2018년 7월에 결재받음)	보직관리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	보직관리지침 운영
직급	국장급, 과장급, 담당급(5급~7급) 89급은 지정하지 않음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인사가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라 가점 부여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수당부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당 지급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좌와 동일